

建築設計 懸賞競技 小考

崔 昌 奎

이글은 1972年 12月에 建築關係三團體가 (建築學會, 家協會, 建築士協會) 意見을 같아해서 各協會의 理事會가 承認하고 委員 3名式을 選出하여 9名의 委員들이 數個月間 世界各國의 資料를 研究하고 討議해서 우리實情에 알맞는 建築設計競技規準을 作成하고 特別機構로서 韓國建築設計競技運用委員會를 構成해서 約 8年間 數많은 設計競技의 不公正함을 是正도 했고 應募拒否도 해 왔으나 昨年에 와서 우리周邊에 建築懸賞設計가 漸漸 頻繁히 일어나 建築界로서는 多幸한 일이지만 建築主들의 耷慾과 建築의 没理解로서 獨善의 不公正한 事例가 있는가하면 우리 三團體會員들의 이 規準을 지키지 않는 傾向이 보이므로 本委員會는 다시한번더 이 機構創設의 趣旨와 精神을 알려서 우리들의 公約을 遵守하는데 積極協力해 출것을 付宅드리는 뜻에서 이글을 쓰게 된것이다.

무릇 建築設計懸賞競技란 2名以上의 建築家가 同一한 建築計劃案을 創作해서 善意의 競爭으로 그中 하나가 選定되어서 建築主에 一回에 限한 使用權을 주는것으로 그作品의 制作權은 永久히 作家에게 歸屬되는 것이나 字句의 뜻대로 賞을 결고 競爭을 시켰기에 當選作에게는 賞金을 주고 또 制作權이 있으므로 本設計는 當然히 當選者가 하게 마련이다.

이때문에 建築家들이 應募했을 경우 當選作은 하나이니 나머지 建築家들의 出血과 努力은 補賞받을 길이 없어진다. 또는 建築主가 實施案이나 計劃案이 마련되어 있으면서도 特定人에게 設計委嘱을 하지 않고 널리 公開로 했다는 明分을 얻기위하는 경우 또는 應幕者나 審查委員들이 不同한 要求條件를 提示받고 進行할 경우, 또는 審查가 公正을 期하지 못하고 情實이 介入되는 경우 等等에 建築家の 權益을 擁護하기 위해 世界的으로는 國際建築家連盟(U.I.A)의 國際建築懸賞設計競技規準이 있어 이를 擁護하고 나아가서는 國際建築文化의 창달에 힘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國內의 與件이나 國民意識의 水準에 비추어 그 規準을 그대로 適用할 수는 없어 前記와 같은 機構를 設立해서 今日에 이르렀는데 우리社會의 變化發展에 따라 우리의 規準을 補完하는 作業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일들은 建築設計를 商品視하고 建築家를 商人視하는 各層의 建築主들의 橫暴와 獨善에 대한 우리들의 自衛手段인 것이다.

우리는 建築主들의 徒卒이 아니므로 命令에 따라 建築의 創作活動을 할수는 없고 우린 商人이 아니므로 注文書에 따라 作品을 값싸게 市場에 提供할 수도 없는 것이다. 또 우리는 專門家로서 良識과 務持를 값싸게 抛棄할 수도 없는 것이다.

勿論 이글의 末尾에 아직 補完되지 않은 既存 우리의 規準을 再記하겠지만 우리의 이 機構는 法的인 根據에서 라기보다 오히려 우리들의 自律의인 公約이요, 自衛手段이므로 誤解 없기를 바라는 것이며 違約會員들을 處罰하는데 그目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確言해 둔다.

이 機構는 違約建築家를 徵戒處罰하는 權限은 없고 오직 그 違約建築家의 所屬團體長에 要講하는 節次만을 行하고 그 以後는 所屬團體長에게 맡길뿐이다.

此際에 3團體에 付托드려야 할 일은 3명의 本委員會를 構成할 委員을 2年마다 選出해 주실것과 本委員會運營에 必要한 豫算을 總會 때마다 策定해 주셔야 겠다는 것이다. 그 金額은 既히 選出派遺된 委員들이 提示할것입니다.

또 三團體全會員들은 本委員會運用을 協助하는데 自發的이고 積極的이여야만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 委員會가 여러분의 委員會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全會員諸位는 自身이 關係되든 아니되든 應幕意思가 있던 없던間에 設計競技의 情報는 本委員會에 알려주셔

야만 하겠습니다.

그것은 本委員會가 情報収集能力이 거의 없다는 點과過去의 体验으로 事前에 情報를 알았더라면 善處되었을 possibility이 많았겠는데, 情報가 늦은 탓으로 교섭만 하다가 無爲로 돌아가는例가 있고 時間의in 余裕만 있다면 더努力할 수도 方法도 있었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本委員會에 대한 意見이나 不滿 또는 本委員會規準을熟讀하시고 솔직한 意見을 所屬團體長을 通하든지 派遺된 委員들에게 或은 個別의으로 本委員會에直接 提言해 주시면 運用改善이나 規準補完에 積極反映시킬 것을 約束드리겠습니다.

要約해서 本委員會는 여러분의 権益擁護와公正한作品選擇으로 모든 應幕者가 物心兩面으로의 損害나出血을 막음과 同時に創作의 權威와 建築家의職能의 尊嚴性을 지키고 나아가서는 建築主나 社會에다 建築家가 利用當하는 일을 막고 善意의競爭으로서 優秀한 建築을 이 社會에 이룩하므로서 建築文化의 창달과 建築家의 社會的 地位確保하는데 그 궁극적인 目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언제인가 國際規準을 그대로 適用시킬 수 있는 이 社會의 建築風土를 構築해야만 하겠습니다.

三團體會員 여러분, 本委員會規準은 三團體理事會의 認准을 얻은 우리들의 公約이요, 規準입니다.

반듯이 치켜주실 것을 墾曲히 附托드리는 바입니다.

韓國建築設計競技規準全文(補完作業中에 있음)

序 文

本規準은 世界的으로 使用되고 있는 國際 建築家聯盟(U.I.A.=Union International Architects)의 懸賞設計規準을 母体로 하여 우리社會實情에 맞도록 建築關係三團體(大韓建築學會, 韓國建築家協會, 大韓建築士協會)에서 選出된 本委員會에서 長期間 研究檢討하여 制定한 規準입니다.

그러므로 이 規準은 3團體의 全會員 建築家를 包含한 全國의 建築家에 依하여 遵守될 것입니다.

또는 建築事業을 執行하는 政府關係部處 및 一般 建築主도 積極的으로 協力해 주실 것을 바라며 本 規準을 遵守해 주실 것을 믿어마지 않습니다.

이로서 우리나라 建築界 建築設計懸賞競技의 規範이 確立되고 國際의in 活動이 保障될 것이며 世界舞台로의 發展이 期約될 것입니다.

1972年 12月 12日

韓國建築設計競技運用委員會

第1條 (目的)

本 規準은 建築物이나 建築과 類似한 構造物의 設計를 公開 또는 指名競技設計로 하고자 할 때 建築主, 應幕者, 協力機關 및 審查委員의 責任, 權利, 任務 및 義務를 規定하여 建築主와 應幕者間의 關係를 公正히하고 競技秩序를 確立하여 建築藝術文化의 發展과 著作權의 尊嚴性을 높이는데 그 目的이 있다.

第2條 (用語定義)

本 規準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 ① 이 規準에서 公開設計競技라 함은 建築主가 參加資格을 特定人의 制限 없이 懸賞應募케 하는 行為를 말한다.
- ② 이 規準에서 指名設計競技라 함은 建築主가 參加資格을 特定한 法人·自然人에게 局限시켜 施行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이 規準에서 建築設計競技運用委員會라 함은 大韓建築學會, 韓國建築家協會 및 大韓建築士協會에서 選出된 設計競技運用機構를 말한다.

第3條 (適用範圍)

- ① 國家機關의 建物中 特殊建物 或은 國家와 民族의 象徵的 建物은 設計競技를 行하여야 한다.
- ② 個人이나 團體의 建物이라도 1項에 類似한 建物은 設計競技를 行하여야 한다.
- ③ 1·2項 以外의 建物이라도 設計競技를 行하여야 한라고 公認되는 建物은 設計競技를 行하여야 한다.

第4條 (運用 및 機關)

- ① 本 規準은 前記한 設計競技가 發生하였을 경우 適用한다.
- ② 本 規準은 韓國 建築設計競技運用委員會가 運用한다.

第5條 (當選者와 實施者)

建築主는 設計競技의 最高得點者(1等當選者)를 本設計 및 工事監理의 擔當者로 指名하여야 한다.

- ① 設計競技의當選者가 建築士法 第25條의 規定에 依한 建築士事務所의 開設登錄을 한 建築士일 경우 建築主는當選者를 本設計 및 工事監理者로 指名하여야 한다.
- ② 當選者가 建築士法 第25條 規定에 依한 事務所의 開設登錄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事務所開設登錄을 할 수 없는 처지일 경우 當選者は 建築物의 本設計 및 工事監理의 業務를 建築士法 第25條의 規定에 依據 事務所開發登錄을 한 建築士를 選定하여 協同設計한다. 但, 著作權은當選者에게 歸屬된다.

第6條 (建築主)

- ① 建築主는 設計競技에 回付코자 하는 建築物의 確固不動한 計劃을 세워야 한다.

② 建築主는 競技計劃의 第1次 段階로 競技에 關한 모든 技術 및 行政的 諮問機構을 設定할 수 있다.

③ 技術 및 行政 諮問을 委嘱받은 建築家는 競技를 完全無缺하게 하기위하여, 競技計劃書(本 規準에 付合되는 것으로 三團體 運用委員會의 承認을 獲得) 競技運營, 建築主에의 諮問 審查 進行 協助等의 任務와 責任을 진다. 그러나 審查에 參加하거나 意見을 陳述할 수 없다. 以下 本條의 諮問委嘱을 받은 建築家를 技術顧問이라 稱한다.

④ 建築主는 必히 審查委員으로 하여금 當選作을 選定케 하여야한다. 當選作 核當이 없을 時는 最高得點者에게 當選者와 同一한 權利를 賦與하여야 한다.

⑤ 建築主는 應募者와 審查委員에게 同一한 内容의 事況만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⑥ 公告 登錄 現場說明 및 作品接受는 韓國建築設計競技運用委員會 規準에 一致되어야 한다.

⑦ 當選作 以外의 優秀作品을 若干 選定 할 수 있으며 建築主는 應分의 製作費를 支拂하여야 한다.

⑧ 建築主는 落選者에게 應分의 製作費를 支費할 수 있다.

第7條 (參加制限)

建築主 및 競技計劃에 關係한 者는 競技에 參加하거나 應募者에게 協力할 수 없다.

第8條 (手數料 및 報酬)

設計 및 工事監理擔當에 對하여는 大韓建築士協會의 「建築設計料率基準」에 따라 報酬를 支拂한다. 指名競技參加者의 參加報酬는 1人當 當核設計報酬의 5%以上, 公募의 경우는 當選者 또는 最高得點者에게 支拂되는 手數料總額을 設計費의 20% 以上으로 한다. 前記한 報酬나 手數料는 實施設計 및 工事 監理報酬와는 無關하다. 또한 建築主는 審查決定 發表後 一定한 期間內에 建築이 實施되지 않는 境遇에 當選者 또는 最高得點者에게 應分의 補賞金을 支拂해야 한다.

第9條 (顧問 및 審查報酬)

技術顧問의 報酬는 勿論, 要求된 일에 比例하나 技術顧問은 全的으로 많은 時間을 이에 專心하므로 充分한 報酬가 주어져야 한다. 勿論, 公的인 費用은 이에 包含되지 않고 別途支拂된다. 審查委員의 報酬는 旅費等 公的인 費用外에 1人當 設計費의 1%以上으로 한다. 外國人の 境遇도 實情에 맞는 報酬 및 公的인 費用을 支拂하여야 한다.

第10條 (審查費用)

審查에 要하는 諸費用은 建築主의 負擔으로 한다.

第11條 (審查委員會)

① 審查委員會는 3名 以上으로 構成하며 그 3分之 2以上은 設計 및 工事監理의 經驗이 豊富한 一級 建築土로서 고매한 人格의 所有者로 한다. 但 外國의 著名한 建築家도 招聘한 수 있다.

② 審查委員會는 一名의 委員長을 選出하며 委員會의 運營을 주관한다.

第12條 (審查委員에 對한 制限)

審查委員 및 審查委員과 特定한 關係가 있는 者는 審查의 公正을 害할 憂慮가 있으므로 應募하거나 應募者을 援助 或은 當核 建築物의 設計 및 工事監理에도 關與할 수 없다.

第13條 (審查方法)

審查委員은 本 規準에 一致하는 自體 審查規準을 作成하여 進行할 수 있다.

第14條 (審查報告 및 發表)

審查委員會에서 決定된 事項의 報告는 委員長이 建築主에게 通告함과 同時 委員長名義로 當選案의 決定을 公表한다. 審查에 關係되는 모든 責任은 審查委員會가 지며 이에 따르는 諸費用은 建築主가 負擔한다.

第15條 (設計競技應募要領)

設計競技應募要領은 韓國建築設計競技運用委員會의 内規에 따른다.

第16條 (應募者의 登錄)

公募나 指名競技의 境遇 應募者는 競技 主催者에게 登錄하고 設計競技應募要領書를 交付받아야 한다.

第17條 (質疑應答)

應募者는 設計競技要領書나 應募事項에 疑問點이 있으면 技術顧問에게 書面으로 問疑할 수 있으며 이를 檢討하여 妥當性을 認定하면 이를 即時 全應募者에게 公平히 傳達하는 同時に 應募要領의 一部로 한다.

第18條 (著作權)

應募設計圖書의 著作權은 核案提出 應募者에게 掃屬한다. 但 1等 當選案은 當核 建築物에 限하여 1回限 關係된 使用權을 主催者에게 歸屬한다.

第19條 (應募案의 禁止事項)

應募案에는 姓名 暗號等 어떤 種類의 標識도 할 수 없다.

第20條 (應募案의 失格)

應募案中 審查委員會가 定한 内規에 어긋나는 案은 失

格시킬 수 있다.

第21條 (應募案의 公開展示)

參加된 모든 應募案은 審查結果를 公表하기 為하여 審查報告書와 同時に 一定期間 一般에게 公開展示한다. 그러나 案이 많을 때는 그 數를 制限할 수 있다.

第22條 (作品返還)

當選案을 除外한 모든 應募案은 公開展示後 二週日以内에 建築主 負擔으로 應募者에게 返還하여야 한다.

韓國建築設計競技運用委員會規定 및 内規

第1條 (目的)

本規定은 建築設計競技規準을 施行함에 있어 委員會의 業務, 責任, 權利를 規定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第1部 委員會 規定

第2條 (位置)

韓國 設計競技運用委員會(以下 本委員會라 칭한다) 는 서울特別市 鍾路區 世宗路 81~6番地에 둔다.

第3條 (構成)

本委員會는 大韓建築學會, 韓國建築家協會, 大韓建築士協會에서 若干名씩 選出된 人士로 구성하며 互選에 의하여 1名의 委員長을 둔다.

第4條 (任期)

本 委員會의 任員 및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나 重任할 수 있다.

第5條 (會議)

① 定期會議는 月 1回를 원칙으로 하며 必要時에는 委員長이 召集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으로 의결된다.

② 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청이 있을 시 위원장은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本 内規는 재적위원 ½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수 있다.

第6條 (財政)

本委員會의 財政은 三團體의 醫出金과 其他の 贊助金으로 한다.

第7條 (權利)

本委員會는 다음의 權利를 갖는다.

① 建築家 個人에게 被害가 없는 한 本委員會가 設計競技에 回附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할 時는 建築主에게 回附를 要請할 수 있다.

② 建築主가 規準에 違背되는 行爲를 할 때 建築主에게 시정을 要請할 수 있으며 이에 不應할 時에는 그 内容을 公開하여 應募 參加를 不應케 할 수도 있다.

③ 全應募者的 應募不應을 三團體에 要請하여 議決되었음에도 불구하고 應募할 時는 그 應募者를 核當協會에 징계를 要請할 수 있다.

第8條 (義務)

本 委員會에는 다음과같은 義務가 있다.

① 本 委員會는 建築主로부터 技術顧問, 審查委員의 推薦을 의뢰 받으면 추천을 할 수 있다.

② 本 委員會는 應募者나 建築主의 一切의 質問에 應할義務가 있으며 答辯內容을 全應募者에게 公知시킬 義務가 있다.

第2部 委員會 内規

第9條 (公告)

① 設計競技의 公告는 廣範圍하게 하여 많은 應募者가 認知 토록 하여야 한다.

② 設計競技 公告에는 規準위 의거하여 懸賞金을 明示하여야 한다.

③ 設計競技公告에는 事理에 맞는 充分한 作品제작기간을 設定 明示하여야 한다.

④ 設計競技公告時 著作權의 侵害나 著作者人格에 損傷되는 用語로 揭載할 수 없다.

⑤ 本 規準에 위배되는 參加制限은 公告할 수 없다.

第10條 (賞金)

① 規準 第8條에 依하여 支拂되는 賞金은 當選作 發表後 1個月 以内에 支拂하여야 한다.

② 公告時에 策定된 金額은 如何한 경우가 있더라도 減少될 수는 없다.

第11條 (建築主)

① 建築主는 應募要領書를 作成 應募者에게 配付하여야 한다.

② 建築主는 公告文이나 施行要領書中 建築設計競技 運用委員會로부터 不當性을 指摘받고 修正 要請이 있을 時에는 이에 應해야 한다.

③ 建築主는 當選者の 同意없이 當選案에 部分的인 變造案을 作成 製作케 할 수 없다.

④ 當選案이 建築主 事情에 依해 建築이 실시 안될 시라도 當選案은 다른 用途의 建築에 使用할 수 없다.

第12條 (審查委員會)

- ① 規準 第11條의 審查委員會는 建築主의 要請期間만 存立한다.
- ② 建築主는 嚴正한 審查를 위한 審查委員會의 如何한 要請에도 應해야 한다.

第13條 (技術顧問)

- ① 建築主로부터 委嘱받은 技術顧問 및 技術職 擔當役은 設計競技規準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技術顧問 및 技術職擔當役은 審查委員을 겸임할 수 있다.

第14條 (審查委員)

審查委員會 構成發表는 公告와 同時에 하거나 審查以前에 하여야 한다.

第15條 (落選作返還)

一切의 落選作은 2週日 以内에 返還하여야 하며 破損時는 補償을 하여야 한다.

附 則

1. 本 規定에 결여된 사항은 운용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附記. 上記한 規準은 1972年 12月에 本委員會가 制定한 것이나 現在補完作業件中입니다. 이 作業이 完了되는 대로 三團體의 認准은 얻어 油印製本해서 會員諸位는 勿論 政府 및 各機關 企業體等에 配布할 豫定입니다.

(신진건축대표)

新刊 韓國傳統木造建築圖集

1. 柱心包式建築 / 2. 多包式建築 / 3. 折衷式建築
- / 4. 翼工式建築 / 민도리집建築 / 圖版解說 / 東洋
三國의 傳統木造建築年表 / 찾아보기

編著者 韓國建築家協會

값 15,000원

發行處 — 志 社